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585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나5853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277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고상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

담당변호사 심정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성빈

변론 종결 2024. 5. 8.

판결 선고 2024. 6. 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2773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20,429,479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29,4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6. 7. 19. C(개명 전 N)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373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30. 'C은 원고에게 26,19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0. 25. 확정되었다.

나. C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1) C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12. 30. 접수 제64127호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20. 10. 27.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C은 2020. 11. 25. 피고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무자를 O(C에서 변경), 근저당권자를 P회사, 채권최고액을 1,4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 ②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Q(R에서 변경),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 ③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Q,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2020. 12. 4. 각 말소되었다.

라. C의 해방공탁에 따른 원고의 공탁금 수령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는 원고가 위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6. 7. 25.자 2016카단4044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C은 위 각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위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26,196,200원을 해방공탁 하여 2020. 12. 7. 인천지방법원 2020카기1656호로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결정이 내려져 위 각 가압류는 말소되었다. 원고는 2020. 12. 10. 위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021. 1. 6. 위 해방공탁금에 관한 C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2020. 12. 4.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고, 원고는 늦어도 해방공탁금을 수령한 2021. 1. 6.에는 제2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사해행위와 그 취소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2022. 3.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원고는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여 소가 진행 중임에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압류에 이은 C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이 2020. 12. 7. 인용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공탁된 공탁금 26,196,200원을 2021. 1. 6. 추심하였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 서증으로 제출한 제1, 2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행일은 모두 2020. 12.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고상현 변호사는 C이 O을 상대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단1256)에서 O을 대리한 사실, ② 고상현 변호사는 2020. 12. 23. 위 사건에서 제1, 2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에도 동일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갑 제9호증 등 서증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상현 변호사는 Q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20카합1050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S를 대리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상대방이 2020. 9. 18.에 조회하여 제출한 시가감정결과를 이 사건에 갑 제14호증으로 제출한 사실, ④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의 당사자는 C인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21. 1. 6.경 제2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가 2021. 1. 6.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제2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소송 여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관하여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8997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2023나7036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소와 위 소송은 당사자와 청구가 모두 상이하므로, 위 소송의 계속 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중복제소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제2매매계약으로 C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C의 O에 대한 350,609,79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도 아니며,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지 않은 채권이므로 위 채권을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2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시가에 근접한 금액에 매수하였고, C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원고가 가압류한 채무를 포함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C은 전체 채무에 비해 극히 적은 액수인 원고의 채무가 잔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 내지 악의가 없었고, 피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재산인지 여부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C의 채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2매매계약 당시 C의 채무초과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7호증,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C이 제2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① O은 2021. 5. 20.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6137호로 제2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의 감정인 T의 감정결과(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은 1,716,344,020원[=442,200,000원(순번 1) + 1,065,900,000원(순번 2) + 118,800,000원(순번 5) + 89,444,020원(순번 13)]이다.

순번 1	인천 계양구 D 전 268m ²	442,200,000
순번 2	인천 계양구 E 잡종지 646m ²	1,065,900,000
순번 3	인천 계양구 H 전 990m ²	226,710,000
순번 4	인천 계양구 I 전 886m ²	240,992,000
순번 5	인천 계양구 F 임야 72m ²	118,800,000
순번 6	인천 계양구 J 답 793m ²	181,597,000
순번 7	인천 계양구 K 전 1250m ²	286,250,000
순번 8	인천 계양구 L 전 2916m ²	667,764,000
순번 13	순번 1, 2, 5 지상 건물	89,444,020
합계	3,319,657,020	

②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O은 제1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6137 사건의 감정인 U의 감정결과(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간별 월간 실질임료는 아래와 같으므로,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기간 중 O의 점유기간(계산의 편의상 2017. 1. 1.부터 2020. 11. 30.까지) 동안의 임료 합계는 350,609,790원¹⁾이다.

2016. 12. 1. - 2017. 11. 30.	6,888,210원
2017. 12. 1. - 2018. 11. 30.	6,942,720원
2018. 12. 1. - 2019. 11. 30.	7,776,170원
2019. 12. 1. - 2020. 11. 30.	8,184,400원
2020. 12. 1. - 2021. 11. 30.	7,431,570원
2021. 12. 1. - 2022. 11. 30.	8,091,840원

원고는 C의 O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C의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C의 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지 않은 채권이므로 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정인 U의 감정결과 및 이 사건 관련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C의 O에 대한 위 임료 합계 350,609,79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O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경위 및 성립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5, 26호증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지 않은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C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다.

③ 제2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51,290,135원 중 698,650,110원2), 제3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중 517,024,502원3),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 43,324,208원(=원금 26,196,200원 + 원금에 대한 2020. 12. 4.까지의 4년 및 131/365일분 이자 17,128,008원), Q의 가압류 청구금액 909,314,900원을 합한 2,168,313,720원이고, 이는 C의 적극재산 2,066,953,810원(=① 제2 부동산 가액 1,716,344,020원 + ② O에 대한 채권 350,609,790원)을 상회한다.

④ 나아가,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인천세무서 등의 조세채권 등 다수의 채권에 기한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제2매매계약의 사해해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매매계약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치를 훼손하여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① 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 감정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제2매매계약 당시 시가 감정평가액은 1,716,344,020원인데, 제2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1,700,000,000원으로 시가에 매우 근접하므로, 제2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C와 피고는 제2매매계약 당시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인천세무서, P회사, Q 등에 대한 C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 혹은 대신 변제하고, C에게는 30,000,000원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는 이를 위하여 2020. 12. 4. C으로부터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V조합, 채권최고액을 2,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C의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제1근저당권을 비롯한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각 말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거의 대부분 이 사건 제2부동산 관련 채무, C의 세금 등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처분 경위가 명확하고, 달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피고가 인수 혹은 대신 변제한 C의 위 각 채무는 대부분 우선변제권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조세채권으로서 제2매매계약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치를 훼손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어 그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라고 할 수 없다.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제2매매계약을 통해 변제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적도 있었으므로, C은 변제가 급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일반채권자들의 채무 일부를 우선 변제하였다거나, 피고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통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로서는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의 채권자들 이외에 다른 일반 채권자인 원고 등의 존재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⑥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인천)2023나12447]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제2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하되, 다만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성혜

판사서회경

판사윤정인

별지

12. 1.부터 2018. 11. 30.까지) + 7,776,170원 X 12개월(2018. 12. 1.부터 2019. 11. 30.까지)
+ 8,184,400원 X 12개월(2019. 12. 1.부터 2020. 11. 30.까지)

2)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51,290,135원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제2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제2 부동산의 가액 1,716,344,020원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319,657,020원)

3) 제3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0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제2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제2 부동산의 가액 1,716,344,020원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319,657,020원)